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. 10. 18 선고 2024가단141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]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

담당변호사 백국현

변론 종결2024. 9. 27.

판결 선고2024. 10. 18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들에 관하여, 피고 B은 2014. 4. 10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제7025호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①근저당권'이라 한다)의, 피고 C은 2014. 4. 25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제8188호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②근저당권'이라 한다)의, 피고 D은 2014. 6. 19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

등기계 제12264호 채권최고액 450,0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③근저당권'이라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①②③근저당권부 각 채권은 그 설정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, 청구취지와 같이 말소를 구한다.

#### 나. 판단

을 제1 내지 2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, ①②③근저당권부 각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,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① ①근저당권부채권의 변제기일은 2014. 6. 9., ②근저당권채권의 변제기일은 2014. 6. 24.,

③근저당권부채권의 변제기일은 2014. 8. 18.인데, 원고는 2014. 7. 18. 소를 제기하였다.

소멸시효는 변제기일이 도래한 때에서야 기산되는데, ③근저당권부채권의 경우 변제기일 도래 이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.

② 원고는 변제기일 이후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, 특히 피고 B에 대하여 2014. 8. 11.

3,000,000원을 변제하였다. 또 원고는 2015. 8. 20. 피고 C와 D에게 각 채무금액확인서를

작성·교부하여 주었다.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케 하는 승인(민법 제168조 제3호)에 해당한다.

③ 피고 B와 D은 원고의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6. 6. 3. 압류(민법 제168조 제2호)에

준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홍관

별지